

의안번호	제 53 호
의결연월일	2007. 11. 23. (제 141 회)

의결사항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총무위원장
제출연월일	2007. 11. 16.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 53 호
------	--------

제출연월일 : 2007. 11. 16.
제 출 자 : 총무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07. 10. 4)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을 “거창군의회 청원 심사규칙”으로
 띄어쓰기 함.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 → 제60조(안 제1조)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의 구성

 1)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안 제4조·제10조)

 2) oo의 규정에 의하여 → oo에 따라(안 제1조·제5조)

 3) oo의 규정에 의한 → oo에 따른(안 제5조·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거창군의회 규칙 제 호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을 “거창군의회 청원 심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3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6조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u>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u>60조에 따라</u>----- ----- ----- -----</p>
<p>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 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5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u>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u>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 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의장은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u>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u>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제5조(이의신청) ① ----- <u>제4조제3호에 따라</u> ----- ----- -----</p> <p>② ----- <u>제1항에 따른</u> ----- ----- ----- ----- <u>제6조제3항에 따른</u> ----- ----- -----</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p> <p>1. ~ 3. (생략)</p>	<p>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 <u>각 호의 어느 하나</u>-----</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u>제9조의 규정에 의한</u>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u>지방자치법</u> 및 <u>거창군의회 회의규칙</u>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p>	<p>제16조(징계) -----</p> <p><u>제9조에 따른</u> -----</p> <p>----- 「지방자치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p> <p>-----</p>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